

박형준 / 5월 / 기출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9	18.5	12	17	12	59.5	1	3.33%	5	30
562188	16	12	16.5	12.5	57	2	6.67%	4	
562576	16	11.5	16	11.5	55	3	10.00%	5	
563199	15.5	12	17.5	9	54	4	13.33%	5	
563528	14.5	10.5	16.5	9.5	51	5	16.67%	4	
562578	14.5	10	15.5	10.5	50.5	6	20.00%	4	
563443	14.5	11.5	14.5	10	50.5	6	20.00%	5	
563002	14.5	9.5	16	10	50	8	26.67%	4	
562227	15.5	10	14	7.5	47	9	30.00%	5	
562508	14.5	10.5	14.5	7	46.5	10	33.33%	4	
562434	15.5	10	14.5	6	46	11	36.67%	5	
563344	15	10.5	12.5	8	46	11	36.67%	4	
562350	16	10	12	7.5	45.5	13	43.33%	5	
563441	11.5	9	15	10	45.5	13	43.33%	4	
562813	14	10.5	14	6.5	45	15	50.00%	3	
562403	11	11.5	10.5	11	44	16	53.33%	4	
562305	13.5	9.5	13	7.5	43.5	17	56.67%	5	
562342	12	9.5	11	11	43.5	17	56.67%	3	
563311	15	8.5	12	8	43.5	17	56.67%	4	
562176	10	9	12.5	11	42.5	20	66.67%	3	
562189	14.5	8	12	8	42.5	20	66.67%	4	
562783	13	9	11	9.5	42.5	20	66.67%	4	
562397	15	10.5	12.5	3.5	41.5	23	76.67%	4	
562408	13.5	11.5	10.5	4.5	40	24	80.00%	5	
563029	10.5	8	13.5	8	40	24	80.00%	4	
562358	13.5	10	9.5	5.5	38.5	26	86.67%	5	
562924	14.5	11	8	4.5	38	27	90.00%	4	
562326	9.5	6	10.5	11	37	28	93.33%	4	
563195	12.5	8.5	12	3.5	36.5	29	96.67%	4	
562349	14.5	10	3	0	27.5	30	100.00%	5	

박형준/5월/기출GS/8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회차가 되었습니다. 4주간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특허법의 러프함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1번은 공동발명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으로서 판례와 함께, 갑, 을, 병에 대해 각각 포섭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을과 병에 대해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공동발명이 아니라고 작성하였다고 하여 크게 감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이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준특허각주에 있습니다),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정리했었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갑이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및 묵시적 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동발명 논점에서 묵시적 이전 가부 관련 판례 잘 정리해 오실테니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특허권 공유 시 지분 비율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지분 비율은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법에 의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논리흐름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특발권의 승계에 대하여 정과 '무'의 조치를 각각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을의 특허권은 무권리자 출원이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존재하고 무는 해당 특허권을 양수한 바 해당 하자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정은 이에 대한 조치로서 템플릿으로 준비해둔 통공정신청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 의 조치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의 조치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무 호심결 확정시 중용권과 이전등록 청구시 103조의 2에 따른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공동발명은 곧 특발권의 공유 및 특허권의 공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출 제될 수 있는 논점들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내용들에 대한 유기적인 이 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8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금지 논점이었습니다. 관련 판례들이 두껍기 때문에 판례 잘 현출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일사부재리 여부, 중복심판 여부 각각 대목차로 나눠 검토해주시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판단시점에 대해 판례들 잘 작성해주시고, 동일 사실도 아니라는 점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주신 경우 인상이 더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심판청구권 남용 관련 논점으로, 민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사부재리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나, 사안에서는 무효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으로 작성해주신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p> <p>3. 소결</p> <p>비교적 친숙한 논점이라 많은 분들께서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잘 준비된 논점이 출제될 경우 욕심을 부리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3번 4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답안 작성해야 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8회/3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3번은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로서, 프린트 카트리지 사건을 모티브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침해를 검토할 때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뜯어서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1은 병의 구입 및 사용 행위가 침해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구입은 실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정적 실시라는 점에서 업으로서의 실시를 결여했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설문 1-2도 잉크의 구입 및 충전, 그리고 잉크카트리지의 사용에 대해 검토할 때, 잉크 충전이 전용품의 생산으로 볼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직접침해 개연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작성하신 경우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잉크젯프린터에 대한 구입 및 사용행위, 잉크 카트리지의 구입 및 교체행위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하는데, 잉크프린터의 사용의 경우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점, 카트리지 교체의 경우 수리/재생산 범리를 강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행위들을 누락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잉크카트리지의 판매 및 수입행위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하는데, 전용품인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사안포섭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제적 소진의 경우 갑과 무관한 자로부터 수입하므로, 적용 여지가 없으나, 언급해주신 경우 추가 점수 드렸습니다.</p>	

3. 소결

해당 프린트 카트리지 판례 역시 비교적 친숙했던 논점이긴 하나, 논점을 놓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리/재생산 법리와 소모품 관련 판례는 같은 사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세트로 기억해주시고, 누락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8회/4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4번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는 산수 문제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그 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득점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답을 틀린 경우 배점을 크게 깎아 채점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128조 5항에 따라,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20억이라는 답이 나와야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론을 거의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답 점수를 크게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128조 4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5만개에 15만원을 곱한 7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해당 금액은 잘 계산해주셨으나, 최대 일실이익이 60억이라는 복멸 논리에 대해 작성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점수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128조 2항 1호 및 2호 금액을 개별적으로 실수 없이 계산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계산 과정이 꽤 복잡하므로 실수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1호 금액, 2호 금액을 각각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최종 금액이 맞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해당 유형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많은 연습을 통해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 당일의 긴장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산으로 답을 꼭 맞히셔야 합니다.</p>	

4주간 특허법의 러프함에 많이 당황하시고 어려우셨을텐데 마지막까지 답안 작성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이렇게 기출문제 1회독 후, 논점의 누락 및 이탈이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 체크해놓고, 해당 문제들 대상으로 목차잡기 2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조치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얻어가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월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꼭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를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85)
3

문제-

1 설문 1)

1 문계정 - 공동발명가 여부 - 33조 2항

특허 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甲, 乙. 丙 관계를 살핀다.

2 공동 발명 판단 기준 위시제

[객관적 기준]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핵심에 실질적으로 기여 했는지 판단 한다

[주관적 기준] 발명의 완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였는지 판단한다.

3 甲, 乙, 丙 관계 판단 - 2.과 丙이 공동발명가

(1) 甲 - 기여 없음

X 관련해서 2.과 계약만 했고 Y관련 단순 아이디어만 제공 하였다

(2) 乙 - X 관련 기여

2.은 관련분배 강 3.의 3성료 X에 실질적 기여 했기

(3) 丙 - Y 관련 기여

丙은 관련 측정 강 3.의 3성료 Y에 실질적 기여 했기

(4) 소결 - 2.과 丙의 상호협력으로, 2.과 丙이 공동발명가

2.과 丙은 甲을 통해 상호협력으로 서로 공동 발명했다



II 설문) 35

1 Y의 권리적 귀속 문제 - 甲

甲은 완전 특허 권리 Y 발명자로 권리적 귀속 문제이다.

2 Y의 리발 등록에 관한 후발적 귀속 문제 - 甲과 乙.

(1) 法31조 1항 디미 취지

사적 권리 원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전 가능하다

(2) 명시적 기발 이전 여부 (23)

제 2 계약에 특허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묵시적 기발 이전 여부 (23)

1) 묵시적 기발이전 가능 문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방식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전 가능하다

2) 묵시적 기발이전 고려요소 문제

묵시적으로 이전 되기 위해서는 역할 기여도, 관계, 출원명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사안적 경우 - 묵시적 이전 (인정)

甲과 乙은 개발 목적 안팎이지만, 甲은 개발과
아이디어와 명시적 기발 과정 전반적 관계로 이전 인정된다

3 결론 -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가능

法38조 1항에 따라 출원 없이 이전 가능하다



III 실은 8) 3

1 특허법상 규정 - 부출래

특허법상 규정은 지분이 특허 관련 문제 않는다

2 민법상 규정 - 판법 2623 2항

(1) 추심 - 권등

공자의 지분은 권등 한 권으로 증명 한다

(2) 복합 위계제 - 가능

공자가 지분이 권등하지 않음은 증명할 경우 권등 지분
추심은 복합 한다

3 민법상 규정 적용 가능 위계제

특허법상 권등을 공자가 할 경우 성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권규정을 도입한다

4 사안의 경우

(1) 원칙 - 권등추심

별다른 인정이 없을 이상 무과 지의 지분은
권등 한 권으로 증명 한다

(2) 예외 - 지분 비율 증명

~~특 9은 무이~~ 지분 비율은 증명하는 권으로 증명
지분 증명 가능 하다

IV 실문(4)

1 戊 특허의 하가 검토 - 법332 1항 본

(1) 법332 1항 본 의의 취지

경쟁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특허 발명자 권리자만 출원된다.

(2) 중간 양도인 관련 취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은
유권자가 이므로 유권자가 출원할 무효사실이 존재할까
고 한다

(3) 사안여 경우 - 2이 무권리자로 출원/특허청결

2은 제 2 계약으로 양도 양도인으로 2이 출원한
X는 유권자라고 양도 하가 있는 특허이다.

2 J의 권리

(1) 무권리자 특허의 권리

선출권 권리 가지는 없고 출제된 선원 가지는 있으나
경쟁권리가 아니게 된다. 권리 가지는 권리로 갖는다.

(2) 조리(1) - 동상 출원 (조)

2019. 07.30 공리로 인하여 X의 생성 부동으로
인해 동상 출원 보한다.

(3) 조리(2) - 공리에의 주장 출원 (조) - 법302 1항 2호

법302 1항 2호 의사에 대한 권리 다만 공리를
2019. 07.30 으로부터 1년이 경과 있다

(4) 3회 ③ 장물권리가 출원 - 법 353 (각각)

1) 사권적 3회 - 무효심판 - 법 1332

[각부] 법 1332 1항 괄호의 J은 장물권리라고

[본안] 戊 출회에는 법 332 1항 본 라가자 있다

[임의행위] 은 합인 J에게 존재한다

2) 소멸

무효심판 확정 될 때 부터 30일 이내로 장물권리

가 존속이 가능 하다

(4) 3회 ④ - 이권증서 신청 (각각)

(가) '다의 합자 등 해 이권증서 신청으로 기분이
원 존속하다 (법 913 1항).

(5) 3회 ⑤ - 이권증서 환부 (각각) 법 913의2

장물권 권리가 J으로 귀속재산권에 X에 대한

이권증서 환부권이 인정 된다.

3 J이 장물 권리가 여부 (각각) ^{승사.} 귀속한다..

(1) X의 환부지 기속 문제 - Z

법 332 1항 본 라가 X를 별당인에게 취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2) 제2 계약에 따른 기속 문제 - 甲

법 313 1항과 법 382 1항에 따라 2과 甲의

계약으로 X 권리가 甲에게 승계 된다

(3) 제 1계약을 이따른 권리 귀속 문제 - J

아무도 출원하지 아니 하여 J에게 귀속된 것

(4) 소결 - J 출원한 권리가

J은 X 특허의 주장한 권리가

4 戊의 권리

(1) J에게 개항 가부 (13)

1) 법 383 1항 3가 관련 위수제

관련 연도인 관련 위수제에서 특허 양수한 3라는
(법 383 1항에 관련된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2) 사안과 결부

戊는 특허권자 인 특허 양수하여 법 383 1항
의 3가가 대체로 개항 가능한가

(2) 실수권 주장 가부 (15)

1) 무효심판 인용 확정시 - 무효권 법 104조

관련권이 원년에 대해 무효권 한변과 무효권이
인정될 때 비록 특허 주장 가능하다

2) 이권등록 취소 확정시 - 이권등록취소법 법 103-2조

J이 이권 등록 취소 하여 관련이 이권등록 재를
실수권 가능 하다

(3) J에 대한 계약 이행

J에게 계약 상 행위로 배상 청구 가능 하다



문제-2

I 실문(1)

1 문제점- 부의 과다 무효행위 조치 - 법 133조

부의 과다 무효행위 조치 판권하여 일4부 대법원
공부 심판은 살킨다

2 각부①- 일4부대회 원형 여부 (소3)

(1) 일4부 대회 원형 - 법 113조.

(소환 정제와 재산 동등으로 사적 분산 심판 확정후 누구의
권할 사을 권할 권리 대개 보한다

(2) 유권

(1) 분산 심판 확정후. (2) 공부 심판 (3) 공부 사정 (4) 공부 권리
이러야 한다

(3) 유권①- 누구권리 (적3)

부도 누구권리에 해당하므로 유권 권속한다

(4) 유권② - 분산 심판 확정시 (소3)

1) 문제점- 관할시점.

① 확정시 또는 ② 심판시 등 무엇을 기한 관할시 분계가

2) 권해 위생제 - 심판시

권해에는 일4부대회 모든 유권은 심판시로

직접적 관할 하였고

3) 권해 위생제 - 확정시



II 실문(2)

1 본체절 - 권리남용의 의미

권력자 부당행위와, 모순된 관계 형성, 실수의 원칙
 적용할 남용이 이에 해당한다.

2 관련 부수제 - 권리남용 부정

본안심판 확정된 권리남용 관련 권리 행사 부수 제도가
 공익수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관련 권리 행위를
 남용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하겠다.

3 각설

행정 소권은 본안소권과 달리 불필요하므로 부당행위 예외
 가 없으면 권력자 행위가 필요하다.

4 결론

행정 소권은 본안소권과 달리 기관력이 인정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아니라고
 하겠다.

5 결론 - 권리남용 여부

본안소권 관련 권리 행사로 권리남용 아니라고

19

문제3

I 실문(1) -1) 2.5

1 잉크젯 프린터의 구동 방식 (소3)

(1) 보조원의 여부 (각3)

무엇을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특허권이라

(2) 실시예부 (소3)

구체 행위를 법으로 보호 가능하게 하다

(3) 소결 - 권리 침해 여부

구체 실시는 권리 침해가 아니다

2 잉크젯 프린터 사용 방식 (소3)

(1) 특허 발명 실시 여부 (각3)

특허 발명 실시한다

(2) 소결 여부 (소3)

근거 명백한 권리가 아니므로 권리권 만된다

(3) 합의서 실시 여부 (각3)

계약 가동과 실시하는 것이다

(4) 소결 - 권리 침해 여부

구체 실시는 권리 침해가 아니다

II 실문(4) -2) 3

1 잉크 구동 방식 (소3)



(1) 잉크가 권용중인여부 (소극)

제스제는 부품의 부를 가지 간접침해 인정하면
 증서 변형 범위가 부강히 확장하여 위반하므로 아님.

(2) 구매가 실시 여부 (소극)

구매는 실시 행위가 아님 (주요로 3호 가음)

(3) 소결

잉크 구매로 간접 침해가 아님

2 잉크 관련 행위 (제한적 적극)

(1) 잉크 카트리지가 권용중 여부 (적극)

잉크 카트리는 잉크젯 프린터의 권용중이 해당 함

(2) 잉크 카트리의 생산 여부 (제한적 적극)

잉크가 잉크 카트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해당
 결과 내리게 함

(3) 소결 - 간접 침해 여부

부여 잉크의 본질적 구성요소 영용 요건에

3 잉크 카트리의 사용 행위 (소극) - 영용으로 생산해야 함.

(1) 권용중의 생산 여부 (소극)

잉크 카트리의 사용은 권용중 생산이 아님

(2) 잉크젯 프린터 생산 여부 (적극) - 직접침해 아님.

잉크 카트리의 사용은 권용중 생산으로 직접침해가 인정될지

아님

II 실문(가)

6

1 임고젯프린터 구입 (소극)

(1) 보조 방식 선택 (적극)

무엇을 임고젯프린터 관련 특허권자가

(2) 실시 여부 (소극)

구매했는지 여부 설명이 실시가 아니라 (법 22조 2항)

(3) 소멸 - 적극 침해 인정

J의 임고젯프린터 구매는 적극 침해 아니냐

2 임고 카트리지의 교체 권 사용 행위 (적극)

(1) 권리 소멸 여부 (소극)

(주)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는 정당한 개작을
치를 하는 일이다

(2) 임고젯 실시 여부 (적극)

무엇을 임고젯프린터를 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3) 소멸 - 적극 침해 인정

J의 임고젯프린터 구매는 사유권 침해 아니냐

3 임고 카트리지의 구매 행위 (소극)

(1) 구상요소 완비 기술의 여부 (소극)

임고 카트리지의 구매는 구상요소 완비 한가

(2) 실시 여부 (소극)



II 실문(3)

5.5

1 링크 카트리리 판매 행위

(1) 각립 침해 여부 (소극)

주요로 인해 진정상 일복 상 열어진 링크 카트리리
침해는 선량 할배 이고 위생제일 생각할 해르
보급하고 있다

(2) 간접 침해 여부 (적극)

1) 물건 변형 간접 침해 - 소극으로 보

물건 변형지 생산에만 시술되는 물건은 이미 한가.

2) 권유로 여부 (적극)

① 소모품 위생제

특히 변형지 본복과 구별이 해장 하여 다른 돈과
없고 쉽게 교체 가능하다. 교체 예정 이라고 무너
권가가 짜르 칸에 같이하면 권동 코에 해장한다

② 사양지 경우

링크 카트리리는 본래 결함 있음으로 하은 통발적 행위인
J이 상업적 수 있는 경우 쉽게 교체 되며, 소모 예정이고
무이 이로 칸에 들어가, 적용된다

3) 권유로의 실사 여부 (적극)

링크 카트리리는 판매 되고 있고 보르 권동클 실사
해당한다.

(3) 소결 - 간접 침해 (각립침해 가능성 고려)



인코 카르리기 관에 행해는 관행 관행이다

2 인코 카르리기 승인 행위

(1) 관행 관행에 여부 (소3)

생략할 게 보통 카르리 관에 행위 같은 다른 다른 관행 관행 아니까

(2) 관행 관행에 여부 (적3)

1) 국제적 소인 인정 여부 (소3)

① 타법상 제1차제

상호 방문 관행 관행 관행 관행 인정 하고 있다
국제적 소인 인정 하고 있다

② 가중심 제1차제

둘이 큰가라 제1차제에서 관행에 이로 하를 관
국제적 소인 인정 행위

③ 관행에 4안

국제 관행 없이 대가 관행에 관행에 무기 대가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② 관행 - 관행에 소인 여부 (소3)

소3로 소인 행위 여부

(3) 관행 -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관행에



12

문제-4

I 설문(1)

~~1-합~~1 최저 보살액 제도 - 조 1283 5항

통계권가는 1283 5항에 따라 최저 보살액
한도 가산 하라

2 구법상 위상제 - 합리적 실수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실수로에서 합리적 실수로
위상제는 한도 가산 하라 한도

3 계산 방법

~~매출액~~ X 임대차 비율에서 실수로의 금액
판매액 X 판매 개수 X 실수율을

4 사안의 경우

80만원 X 5만대 X 실수율(5%)
= 20만원

5 결론 - 20만원

조 1283 5항은 20만원 한도 가산 하라

3
 2) 설문 (2)

1) 청계가 이익액 - 법 128조 4항

특혜 배당액 받은 책임 정하는 제해 김해
 과 이익액으로 계산 한다.

2) 법정 성실 위수제 - 후부

법 128조 4항에 법정 성실은 임원 책임 완화
 를 위한 후부 규정 이므로 연계 되기 부면
가는 하라

3) 특혜권자 생산 능력 증명 통한 부면 위수제

특혜권자 생산능력을 증명한 증명을 하게 되지
 될해 가지 이익 액보다 작은 경우 부면
가는 하라

4) 계산 방법

(1) 후부 금액

청계가 이익 액으로 계산한다
환계 대수 x 이익액

(2) 부면 금액 - 법 128조 1항 1호 9호

특혜권자의 배당액 이익액으로 계산 한다.

Max [(청계가 환계 대수 - 청계가 환계 보카) (생산액 - 환계량) * ^{배당액}] x 이익액



5 결론

(1) 총생산액 - 75억

$$15\text{만원} \times 5\text{만개} = 75\text{억}$$

(2) 부별액 - 60억

$$\text{Max}[(12\text{만} - 7\text{만} - 2\text{만})(5\text{만} - 0)] \times 20\text{만원} = 60\text{억}$$

II 실문(3)

1 배려권자 이익액 - 법 1283 1항

입력형식 산재한 문헌 배려권자 권리인 위한
총생산액이다.

2 계산 방법

(1) 법 1283 1항 1호

$$\text{Max} \left[\begin{aligned} &(\text{판매가} - \text{양조수입} - \text{판매 행위 외 판매 불가수입}), \\ &(\text{생산액} - \text{생산보가수입} - \text{양조수입}) \end{aligned} \right] \times \text{배려권자 이익액}$$

(2) 법 1283 1항 2호

$$\begin{aligned} &(\text{판매가} - \text{양조수입} - \text{1호수입} - \text{판매행위 외 판매 불가수입}) \\ &\times \text{판매액} - \text{판매액} \times \text{판매액} \end{aligned}$$

3 판매 행위 외 판매 불가수입 제외액

판매가가 시장 가격으로 ~~변~~ ~~귀속~~ ~~되는~~ ~~경우~~

함께 보가 가능한 양의 수익 변화 평가.

4 사안의 경우

(1) 1호 금액 - 60억

$$\text{Max}[(5\text{만} - 0), (12\text{만} - 2\text{만} - 1\text{만})] \times 20\text{만} = 60\text{억}$$

(2) 2호 금액 - 8억

$$(5\text{천} - 3\text{만} - 0) \times 80\text{만} \times 5\% = 8\text{억}$$

(3) 함께 - 68억

68억 예상 한자.

(박수홍 크로스. 상표 기준 부여 귀속 가치)
고생 많아 했습니다. ! 차이 있 니다 용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6

1. 선택 1번

3

1. 농업 - 法 333 조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3이 공동발명이라기 문제된다.

2. 공동발명의 요건 (제33조)

(1) 주요적 요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상당정착력이 있다.

(2) 객관적 요건

가식성이나 공약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3. 공동발명의 여부와 여부

(1) 甲의 경우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시하거나 기분이나 순수를 제공한 경우 "가식성이나 공약이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않아 공동발명이 아니다.

(2) 2, 3의 경우

작성을 제시하거나 발명을 완성한 경우 공동발명이라 기여 "실질적으로 상당정착력"을 기여 하였으므로 2, 3은 공동발명이다.

II. 설문 2번

3.5

1. 농업- 法 373 항

특허권은 24시간인 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특이 목적을 승계하거나 문제된다.

2. 특허 명세서 승계 여부 (22)

특허 권자에게 명세서로 권리를 이전할 사항이 없다.

3. 특허 목적 승계 여부(1) 목적 승계 (제131)

특허를 받은 수 알 권리를 목적 외로 다른 것은 양변의 "목적", 기여도, 두 사람의 관여, 출원시 제반 사항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사안1) 특허 양도

특허 권자에게 기발적인 리제어 아이디어를 개시하였고 J과 계약함으로써 발명 X와 Y의 결합을 전기 광학의 발명에 시도를 만든 "목적"을 했다.

2) 특허 양도

특허 권자가 "공동출원"을 시점으로 하여 특허 양도는 특허에게 리제어 권리가 존재한다.

4 결론

특허를 받은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다.

III. 실문 3번

1. 논점 - 공표관계 법적성질

특허법은 공표관계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되기 전 합류한 유체한 성질은 가변 무체재산권의 특성이 다른 것이다.

甲, 乙이 1:1로 교환을 하기로 문제된다.

2. 공표 관계 배분

(1) 특허법 규정 문제

특허법은 공표 관계 배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민법 262조 2항

민법 262조 2항은 공표관계는 동등하게 교환가능하다고 규정한다.

(3) 사회적

민법 262조 2항은 특허법 99조 2항, 4항이 반대의이고 특허법 특문시 반대의 양으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사안

공표 관계 甲, 乙은 민법 262조 2항에 따라 1:1로 교환 배분을 가진다.

3. 결론

~~甲의 것은 1:1로 리본비율을 가진다.~~

IV. 결론 4번

6.5

1. 2의 출원이 적법한지

(1) 法 33조 1항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무권리의 출원 (실패)

양도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계약도
한 것 양도인이 출원한 것 양도인 "양도 권리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무권리의 출원시 해당된다.

(3) 소결

양도인 2의 출원은 무권리의 출원으로 부적법하다.

2. 1의 대항거부

(1) 法 38조 1항

출원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제3자와
대항한다.

(2) ~~무권리의 출원의 승계인이 제3자인지 (소결)~~

실패는 ~~출원권~~ ^{法 38조 1항} 승계의 권리의 신득은
유형이고 무권리의 출원의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대항이 가능하다.



(3) 사안

J은 재외국을 이유로 대응할 수 없다.

3. 무권리의 취득의 시기

① 선출권자거나 무권자하 (法 363 5항) ② 공개된
양식 공시권자거나 일조 행해진 선출의 시기는 무권인
 발생의 시기는 없다.

4. J의 사안에 대한 쟁점(1) 선출권 위반의 하자

J의 통상의 출원시 주체 선출권자 의해 공시된
 선출권 위반의 하자가 없다.

(2) 공시예외규정 불가 (法 302)

2018. 12. 17 이후로 1년 내에만 공시예외규정 가능한
 바 J은 공시예외규정을 할 수 없다.

(3) 정당권리와 취득 (法 352)

J은 무권리의 취득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판 행형 등 30일 이후로 취득시 무권리의 취득자인
 2018. 5. 28 일로 "~~선출권~~ 선출권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특허권이전등록권

특허권과 특허가 된 경우 특허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특허권이전등록권 권리

특허권과 특허가 되기 앞서 특허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특허권에 대한 권리

(1) 제약권 특허권이행

특허권자에게 제약권 특허권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당행위당시권리

특허권자에게 부당행위당시권리가 있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끝>

<문제-2>

115

I. 섯 번

8.5

1. 일시부속의 권리 귀환여부

(1) 특허, 권리 (특허법 63조)

심판의 효력, 위변조 방지하기 위해 불인정권 획득시 동일
심판, 시선, 증거를 이유로 출원할 수 있다.

(2) 도전

~~1) 가항력 인정되어 불인정이 인정되면 1) 무효심판~~
이 중 동일심판인 바 2) 동일사실의 여부다 3) 본
심권 행사시점이 문제된다.

(3) 불인정권 행사 판단사항 (특허법)

불인정권 행사 판단사항은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 심판의 효력을 받은 심판은 재판의 법원의 효력을 인정
하게 만들 수 있고 특허법 63조 불인정 규정의 효력
없다. 이유로 인정하든지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의 효력으로 인정하리라.

(4) 동일사실, 동일행위 판단사항

출원의 이유는 심판까지의 불인정이 가능한 바 (특허법 63조 2항)
심판시까지의 제출된 증거의 여부를 가리 동일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사변

1) 본인실질 특허사범

본인실질 특허사범은 특심판정규칙이므로 2019. 1. 16일은
기존으로 (리싱계약에 따른 권리가 대법원 제1회 2019도1001호)
본인실질 특허사범이 아니다.

2) 동일사실 판단

무효사유가 전혀 다른 이유로 출원된 경우 2차례에
동일사실의 경우 (제1회) 리싱받은 권범,
2회 심판판결 동일사실, 비판정판결 상이하.

3) 소결

일부판결을 원판결이 상이하지 않다.

2. 공복상판결의 개념

(1) 의의 차이 (제1회 2019도1001호)

상판의 문, 기록을 방위하기 위해 동일한 ~~판결~~
같은 심판은 이유로 판정할 수 있다.

(2) 판

① 동일 당사자 ② 같은 심판 ③ 출원 제1회 2019도1001호
/부, 2회 동일한 무효심판은 바 판단결정이 존재한다.

(3) 출원제1회 중 판정사범 (제1회)

1) 판정사범 293 조 준용

판정사범 293조의 공복판결을 준용하여 사실심판은



중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일시불러내 권한 취소시 의미

일시불러내 권한취소처리는 대개로 인한 쿼리 유효기간을 최신타기 위해 상연처리로 변경된 것이다.

3) 일시불러내 키

일시불러내 중복성판은 상연의 뜻, 목적을 분명히 할 쿼리가 동원하나 연이 같다.

4) 소결

중복성판과 상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사안

1) 판례명- 상연시

후심판 상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9. 11. 19일 시 최 상연이 상가안으로 판례가 확정되었다.

2) 소결

따라서 위의 2회 상연판은 중복성판이 아니다.

3. 결론

① 일시불러내권도 아니다 ② 중복성판권도 아니다.



I. 셋째 3

1. 가판액 의미, 쿼리

가판액은 판권의 문, 리츨을 방지하기 유치 특정인 후의 다른 구속력 의미한다.

2. 부의 2회 상판권자 권리남용인의

(1) 취지

판권자에게 판권이 특정인 유치 가판액에 이러 판권 하는 바 가판액이 각종 판권 유치 가판 후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

부의 2회 상판권자는 ~~판권~~ 권리남용이 아니다.

(1) 가판액 논리 ①

부의 2회 상판권자는 인사부의 중복 판권의 사유를 이탈 판권 권리남용이다

(2) 가판액 논리 ②

부의 방어진 판권 인사부가 판권

(3) 결론

가판액 권리남용 인사 판권 판권

3. 결론

권리남용이 아니다.

<끝>

<문제-3>

16

I. 실은 1번-1

2.5

1. 농림-법 94조

특허권자는 임의로 특허방식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 행위가 침해받지 않는다.

2. 특허의 집행권(1) 실시권기 여부

집행권은 실시권이 아니다 (법 23 조 3항 기독)

(2) 소멸

특허 집행권은 침해가 아니다.

3. 특허의 사용권(1) 실시권기 여부

사용권은 실시권이 아니다 (법 23 조 3항 기독)

(2) 소멸 적용 여부

특허 무효판결 판결에 구제할만한 소멸 되지 않는다.

(3) 가정용 실시인 경우

임의로 실시하지 않고 가정용 실시는 해당이다.

4. 결론

특허 특허권은 각 집행권행하지 않는다.

II. 실용 1-2번 2.5

1. 특권 - 기업공개 (法 1212)

특권은 무체재산권인 바 공개권은 공개로 인정된다.
특의 실용이 기업공개에 인정된다.

2. 무체재산의 장 (法 1212 1항)

무체의 생신에 관한 사항은 무체에 관하여 특히 장
기업공개에 따른다.

3. 특의 기업공개

특의 기업공개는 특정에 관한 바 기업공개에 따른다.

4. 특의 특허

특의 특허는 특정에 관한 바 기업공개에 따른다.

5. 특의 실용

(1) 원칙

특권 무체재산 바 특권의 인정된다.

(2) 실용

특의 실용은 특정에 관한 바 (法 1212 1항)

6 결론

출원항목이 문제되므로 기각의 소인바 ㄱ은 ㄱ의 특이점을 간접항목이 아니다.

II. 선택 2번.

5-5

1. 농업-법 제 91조

권리방기 시점부터는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 ㄱ이 ㄱ의 특허를 직접항목이 아닌 문제된다.

2. ㄱ의 양도권 관련 구입항목

구입항목은 실시항목이 아닌 직접항목이 인정된다.
(법 23 조 3단 기각)

3. ㄱ의 양도권 관련 사용항목

(1) 취득여부

무엇보다 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 실시여부

~~사용항목은 실시항목이다 (법 23 조 3단 기각)~~

(3) 법정의 실시

ㄱ은 업무상에서 실시한다

(4) 소급

ㄱ의 사용항목은 직접항목이 아니다.



4. J의 앙카드라이 제형

구입형제는 산성제가 아니므로 중성이 부합된다

5. J의 앙카드라이 교체 및 사용

(1) 부품 교체 (교환)

부품 교체를 동업이 수리한 것을 사용 및 한번은 수리하기로 한 동업을 수리하지 가장 먼저 수리한 생산하기로 특권을 취할 수 있다.

(2) 소원여부

무엇과 관계 없던 바 소원이 없다.

(3) 교환 (교환)

당해 제품의 수리, 이송, 취급 관련 교환 여부 확인 해야 함.

(4) 사안

1) 동업은 허한 장면비 (적용)

J의 앙카드라이 교환형제는 동업을 수리하지 수리한 생산 기 이다.

2) 소결

J의 앙카드라이 교체 및 사용 는 적용 된다.

6. 결론

J의 형제는 적용 된다.



Jv.	선택 3번 5.5
1.	특허권 선택 적용 여부 (선택)
	무권리자에게 <u>습득권</u> 바 특허권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2.	<u>적용항에 여부</u>
	(1) <u>특허권 행위의 원위 (부위)</u>
	(특허권 행사) 특허권 권리가 침해되거나 특허권이 유각 적용항에 대해 <u>특허권이 침해</u>
	(2) <u>사본</u>
	양자택일 <u>양자택일</u> 의 일부인 바 <u>적용항에</u> 아니다.
3.	<u>적용항에 여부</u>
	(1) <u>의미, 권리 (법 121)</u>
	특허권은 무대배신권인 바 <u>침해판단</u> 비용하여 <u>침해</u> 판단을 <u>침해</u> 로 간주한다
	(2) <u>특허발명의 종류 (법 121조 1항)</u>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발명을 <u>판단</u> <u>신속한</u> <u>종</u> <u>적용항에</u> 이다.
	(3) <u>카타리 조항 (부위)</u>
	특허발명의 원위 <u>경우</u> ① <u>불권적인</u> <u>경우</u> <u>허당하</u> ② <u>다른</u> <u>종류</u> <u>있어야</u> <u>한다</u> ③ <u>습득</u> <u>가능</u> <u>있어야</u>
	④ <u>판단</u> <u>조항</u> <u>예외</u> <u>있고</u> ⑤ <u>특허권</u> <u>침해</u>

2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된다.

(3) 시인

1) 분리된 점, 타종 부품을

① 양쪽 프린터가서 잉크카트리지인 분리된 점의 경우 해당한다

② 특히 특허된 양쪽프린터에만 시인하는 잉크카트리지
스업하 된다.

2) 교체 예외

잉크카트리지인 신제품인 같은 교체가 예외가 된다.

3) 소결

잉크카트리지인 공용성과 권유성을 같이 권유한다.

(4) 권유성 판인 (4대3대1)

사실상 공용성 통용이 승격으로 경계, 승격, 실용성인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하는 이론, 안정, 실용성이 성
이는 가능하다.

4. 결론

즉 잉크카트리지 수입, 판매하는 직접하는 방법이나
"특수"에 의해 간접하는 방법이다.

<끝>



<문제-4>

11.5

I. 섯 번

1. 법-法 1282

과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액 계산

(1) 法 1282 항 이의, 취

특정권리 침해액인 인건급 900만 원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2) 개원비

손해액인 합당액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개원비이다.

(3) 계산방법

합당액의 판매수량 X 판매액 X 합당적인 손해율

(4) 사실

합당액의 판매수량 (5만) X 판매액 (80만원)
X 합당적인 손해율 (5%) = 200만원

3. 결론

200만 원에 해당한다.



II. 섰 2번

1. ~~법 128조 4항 연의, 취의~~ 2.5

특허권과 인공적인 인상을 위해 침해의 이익을
특허권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계산식

침해자의 양적상 X 침해자의 1회당 이익액으로
특허권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사안

침해자의 양적상 (5만) X 침해자의 1회당 이익액 (15만)
= 750만 원으로 인정한다.

4. 결론

750만 원으로 인정한다.

Ⅳ 셋째 3번

1. 法 1283 2항 2단

특허권리 양도권 인정에 있어 특허권리 양도권 인정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法 1283 1항

(1) 계산식

$$m \times (\text{특허권의 양도수량} - \text{실제양도수량}, \\ \text{생존가능수량} - \text{실제양도수량}) \times \text{특허권의 단위} \\ \text{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생존가능수량

2012년 5월, 6월 생존이 불가능했으므로
 $10,000 \times 10 \text{개원인} = 10 \text{만개원}$

(3) 사건

$$m \times (\text{특허권의 양도수량} (5 \text{만}) - \text{실제양도수량} (\emptyset), \\ \text{생존가능수량} (10 \text{만}) - \text{실제양도수량} (1 \text{만})) \\ \times \text{특허권의 양도권당 이익액} (20 \text{만원}) \\ = 3 \text{만} \times 20 \text{만} \\ = 60 \text{억 이다.}$$

(4) 소결

法 1283 1항의 손해액은 60억이다.

3. 특 1282 2항 2단 계산

(1) 계산식

$$\left(\begin{array}{l} \text{출처의 양수량} - \text{원수량} - \text{산원설계불가수량} \\ \times \text{출처의 판매액} \times \text{합리적인 산비율} \end{array} \right)$$

(2) 산인

$$\begin{aligned} & (\text{출처의 양수량 (5만)} - \text{원수량 (3만)} - \phi) \\ & \times \text{출처의 판매액 (80만원)} \times \text{합리적인 산비율 (5\%)} \\ & = 2만 \times 80만원 \times 5\% \\ & = \underline{80} \end{aligned}$$

4. 특 1283 2항 계산

$$\underline{10 (60\%) + 20 (80\%) = 68\% \text{이다.}}$$

5. 계산

68%이다.

<끝>

환의병!